

일조권과 건축

Right to Sunshine and Architecture

朱命錄 / (주)인천건축사사무소
by Chu Myeong-Rok

이웃 일본의 각계 저명인사들이 사는 저택의 대다수가 목조건물로써 교외에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일이다. 왜냐하면 장수에는 세계의 선두에 서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각인각색의 취향 또는 직업의 특수성과 교육, 교통 등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사정이 허용된다면 복잡한 대도시에서 무리하게 일조권 확보에 혈안이 될게 아니라 가급적 교외의 거주지역에서 충분한 일조공간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서 항상 건강하고 활달유쾌한 생활을 즐기며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옛날부터 우리민족은 햇님 숭앙정신이 뿌리깊게 몸에 배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에서도 눈에 띄게 일조시간이 긴 나라에 속하며,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들은 입을 모아 푸르고 높으며 아름다운 가을하늘을 찬양한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조건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의 햇님 숭앙에는 좀 고무한 데가 있어서 주택을 매매할 때의 분위기를 보고 있노라면 일반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향집을 많이 선택하는데, 햇별이 잘 들어오는 집은 즉 행복과 선과 부를 상징하며 햇별이 잘 안드는 집은 불행과 악과 빈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또 햇별이 좀 가려지느니 일부가 그늘이 지느니 하고 큰 일이나 날것같이 기괴하는 것을 보아도 햇빛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뿌리깊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말이 표제에서 좀 이탈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젊었을 때는 흥가란 말을 종종 들을 수가 있었다.

이런 집에서는 웬일인지 원인도 모르게 시름시름 앓다 죽는 사람, 정신질환을 앓다 죽는 사람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죽는 등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아 그로 인해 신음하다 폐가상태가 된다고 하며, 제아무리 햇별이 잘 들고 잘 지어진 집이라해도 팔리지가 않고 흥가란 낙인이 찍힌 채 방치된다.

흥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못이겨서 기본적으로 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단층 목조 와가로서 일반주택과 조금도 다른 데가 없고 또 주위환경 역시 일반 주택가와 전혀 다른 데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흥가의 낙인이 찍히게 되었는데 대해서 알려고 무척 노력도 해 보았으나 그 주변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끝내 알 수가 없었다.

그후 향시 반신반의 궁금한 상태에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 외서에서 흥가 등에 대한 해명을 볼 수가 있었다.

그 책에 따르면 그런 흥가의 지하에는 반드시 수맥이 관통하고 있다며 이 수맥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맥을 끊어 버리거나 그 수맥을 피해서 옮겨 지으면 흥가의 오명을 씻을 수가 있다고도 했다.

또한 사찰 등의 큰 목조 건물에서 자다가 심야에 느닷없이 바닥에서 물건이 구르는 소리 또는 메로 어딘가를 내리치는 소리 등으로 깜짝 놀라서 도깨비가 나왔느니 귀신의 장난이니 하며 소동이 벌어지는 이 괴음현상은 큰 목재 부재의 이음 맞춤 등의 접촉부위에서 수축 또는 팽창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으며, 조용한 심야에 더욱더 크게 들리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태양광선에는 살균작용이 있다고 한다. 그것을 알고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우리네 아낙네들은 옛날부터 세탁물을 남의 눈에 띄건 말건 햇별이 잘 쬐이는 곳이면 어디에나 펼쳐 말리는 습성이 있었으

며, 지금도 아주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나 수년전만해도 이런 광경이 많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남의 눈에 띄는 곳에서 세탁물을 말리면 주위의 주민이나 경찰관의 호된 주의를 받게 된다고 하며 그 지방의 시 조례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한다.

각설하고 요즘 신문을 보면 일조권 등의 건축과 관련한 분쟁기사가 간간히 눈에 띄는데 이것은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편해짐에 따라서 건강과 장수에 관심이 많아지고 각자 자기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다보니 인구는 많고 국토는 좁디 좁으니 어쩔 수 없이 일조권이나 경계선 분쟁 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제3자의 입장인 사람이 여기에 왈가왈부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다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대도시 빌딩가에서는 일조권의 실효를 거두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물론 거기에 적절한 범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애당초의 입법취지 그대로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어도 대도시의 경우만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지금의 실정인 것 같다.

현행법대로 일조권을 확보했다고해도 매연과 분진에 오염되고 탁해진 공기층을 통과해야 하며, 대소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태양광선의 행로에 많은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어 그로 인하여 광선의 차단이 많아지는 등 인체의 건강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도시의 실정이 아닌가 싶다.

거듭 말하지만 위법없이 설계시공 되었다해도 대도시에서는 시간때에 따라서는 높은 구조물 때문에 어디에선가 태양광선이 차단되어 일조의 실효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게 된데가 여기저기에 있다.

그러나 일조권의 혜택이 좀 미흡하다고 해서 구라파인 들처럼 나체가 되어 자주 일광욕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광욕을 자주하는 사람들의 거주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맑은 하늘과 긴 일조시간의 천혜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문불출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한 건강에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오염되고 탁한 공기층과 콘크리트의 숲 때문에 대도시 주민은 태양의 혜택이 감소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콘크리트 건물의 벽은 인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자외

선의 투과를 차단해 버린다.

목조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면 자주 외출을 하지 않아도 자외선이 투과되니까 얼굴색도 별로 변하지 않고 건강이 유지되나 콘크리트 건물에 거주하면서 자주 외출을 하지 않으면 희멀건한 얼굴색으로 변하고 감기나 천식 등에 걸리기 쉬운 약체로 변할 염려가 많다.

대도시 주민이나 지하실 종업원 등에서 이런 예를 흔히 볼 수가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비단 자외선 뿐만이 아니라 원자폭탄 폭발시 발생하는 무서운 죽음의 감마선도 벽두께 40cm면 투과를 저지할 수 있으며, X선도 납판으로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 역시 두께 40cm콘크리트 막으로 차단이 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약간 막연한 감이 없지 않으나 대개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웃과의 경계선 분쟁의 일례인데 지적도와 측량에 의거하여 담장 시공이 시작될 단계에서 옆집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쳐서 할 수없이 시공을 중단하고 옆집에서 했다는 측량말뭇 위치와 대조해 보니 이쪽 A측량사무소에서 한 것과 옆집에서 신청한 B측량사무소에서 한 것 간에 오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이상히 여겨져서 이번에는 C측량사무소에 신청해서 3차 측량을 한 결과가 1,2차 때와는 또 약간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정신이 어지러울 때가 있다.

이럴때 까다로운 이웃끼리 만나면 2,3년 또는 그 이상 길게 가는 장기분쟁으로 번질 염려가 있다.

그런데 약간의 측량의 오차는 공식적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니 측량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미세한 오차 같은 것을 묵인하고 사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이 된다.

이웃 일본의 각계 저명인사들이 사는 저택의 대다수가 목조건물로서 교외에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일이다. 왜냐하면 장수에는 세계의 선두에 서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각인각색의 취향 또는 직업의 특수성과 교육, 교통 등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사정이 허용된다면 복잡한 대도시에서 무리하게 일조권확보에 혈안이 될게 아니라 가끔적 교외의 거주지역에서 충분한 일조공간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서 항시 건강하고 활달유쾌한 생활을 즐기며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